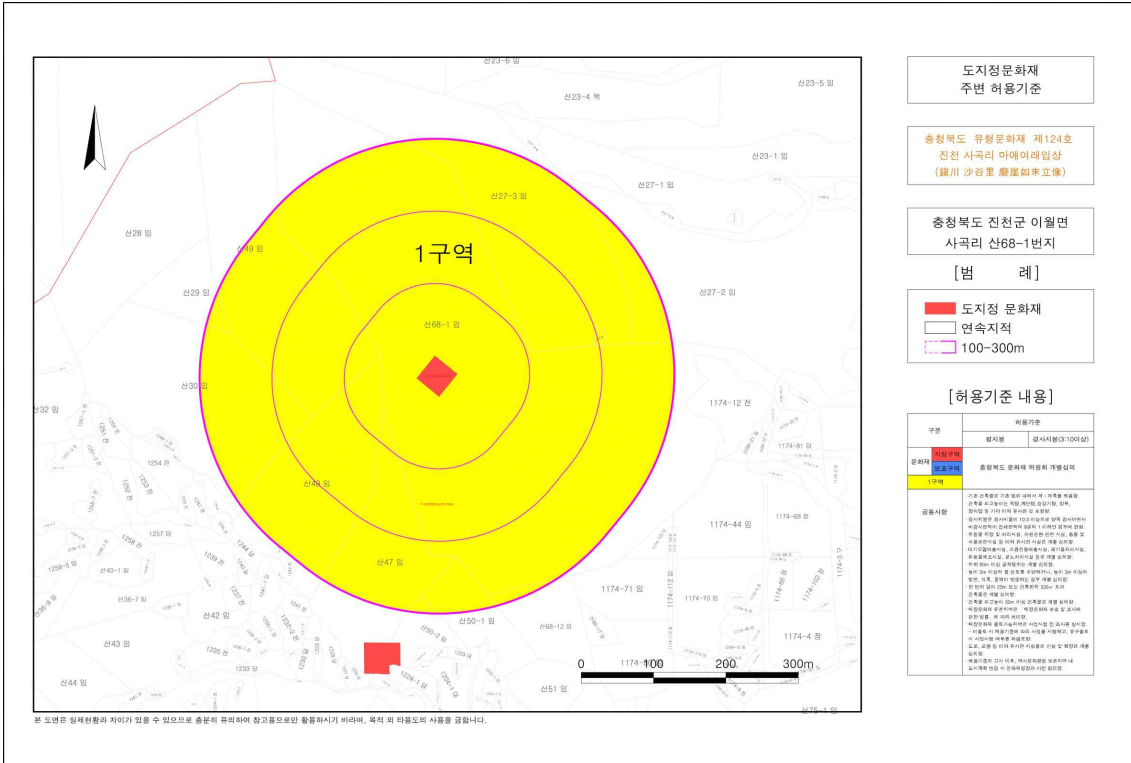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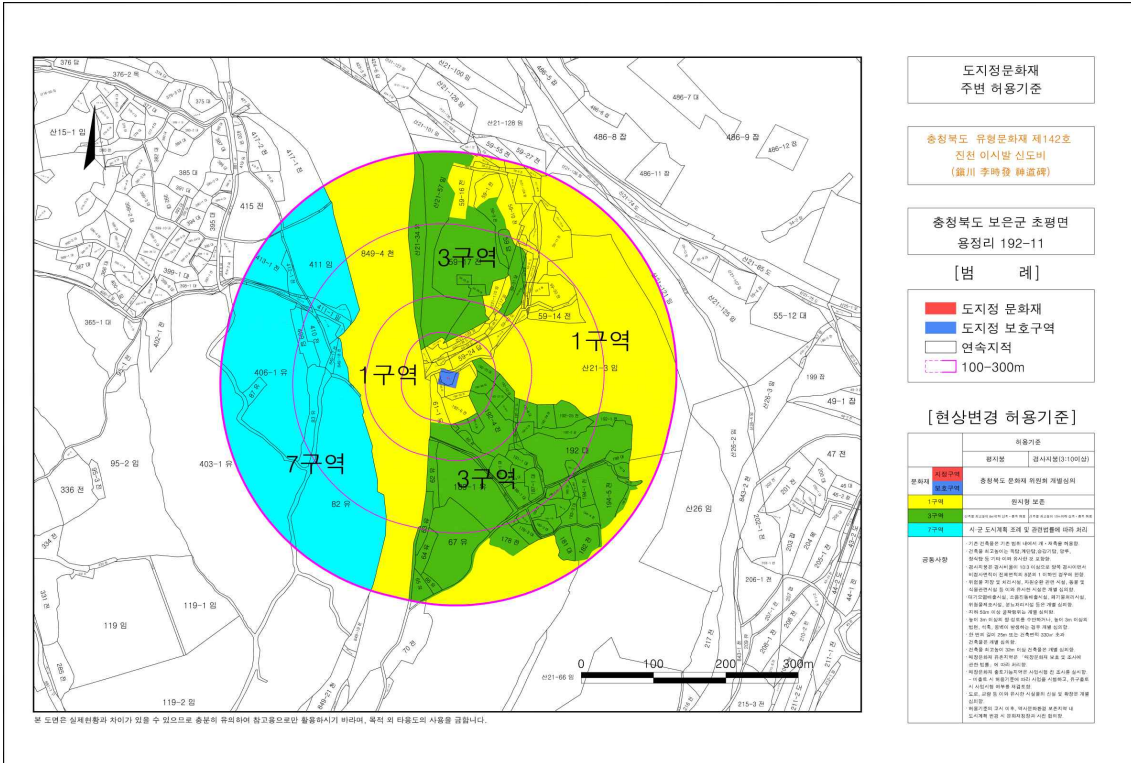


# 01. 진천 사곡리 마애여래입상(유형문화재 제124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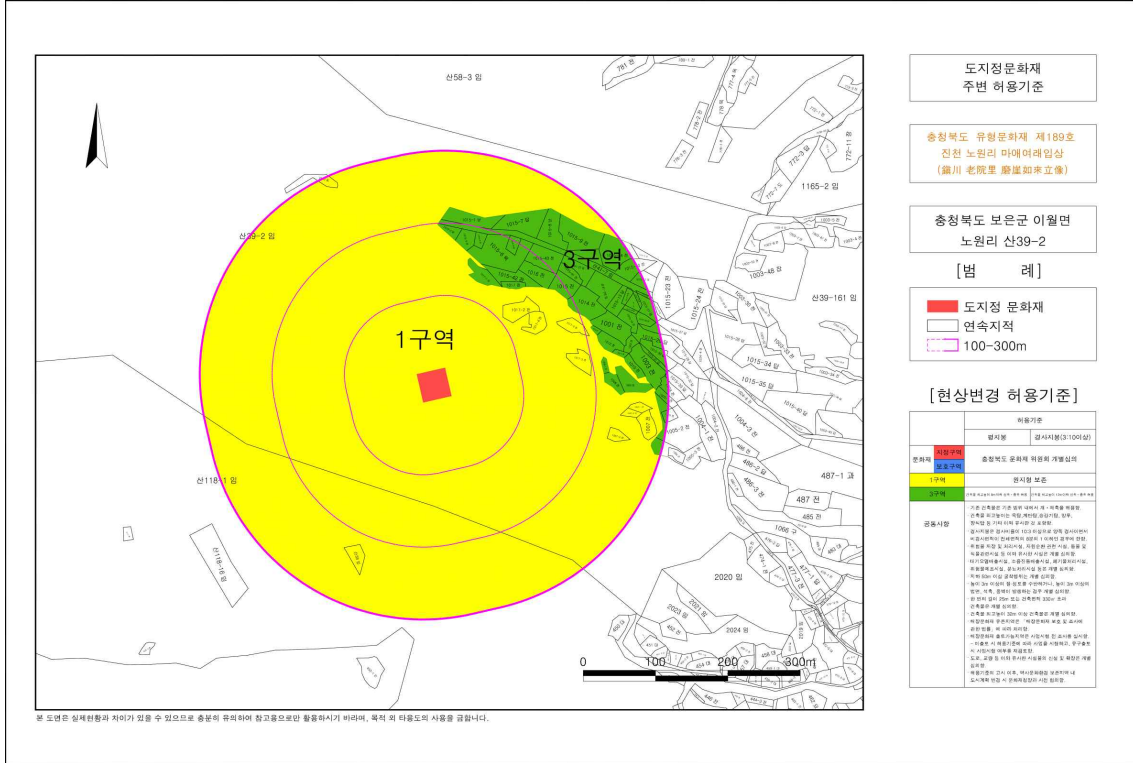
구 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경사가 3:10이상)
문화재	지정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충청북도문화재위원회 개별심의</li> </ul>
	보호구역	
1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재·재축을 허용함.</li> <li>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li> <li>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li> <li>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li> <li>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규제법),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 심의함.</li> <li>지하 50m 이상 굴착행위는 개별 심의함.</li> <li>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li> <li>한 번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단, 평지붕 8m 또는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li> <li>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li> <li>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li> <li>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조사·표본조사·시굴조사·정밀발굴조사 중 선택적용)를 실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출토 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유구출토 시 사업시행 여부를 재검토함.</li> </ul> </li> <li>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li> <li>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li> </ul>	

## 02. 진천 이시발 신도비(유형문화재 제142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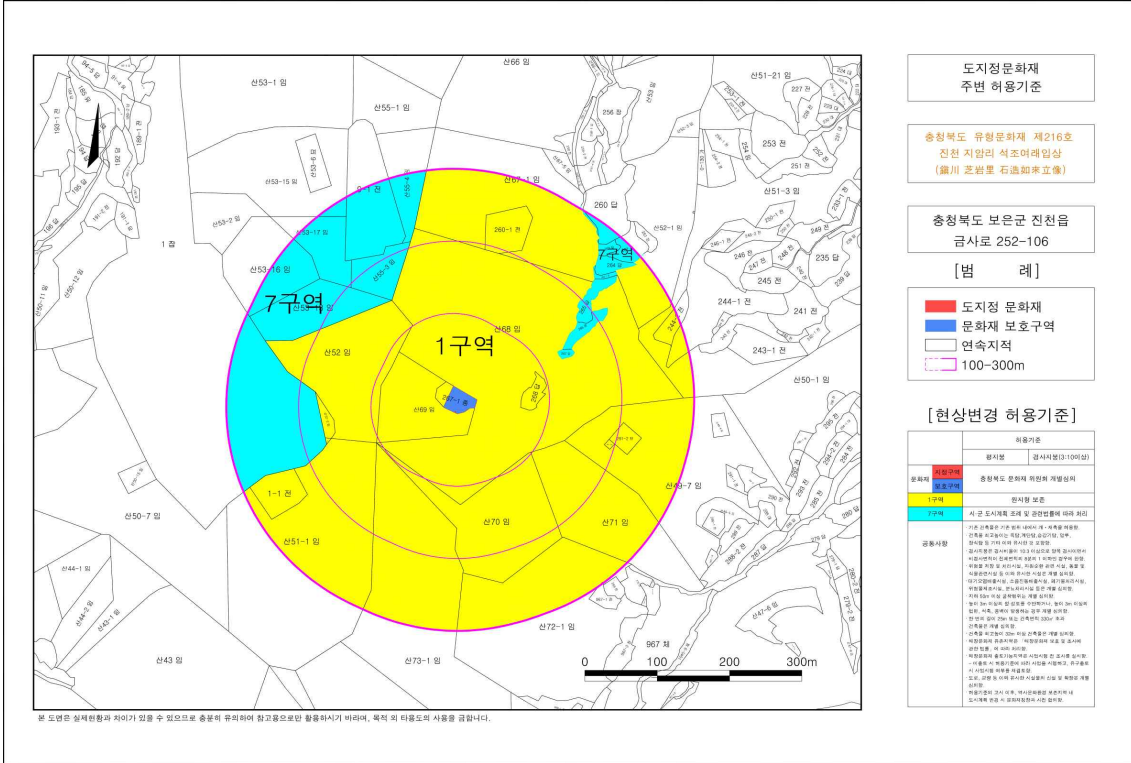
구 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경사가 3:10이상)
문화재	지정구역	
	보호구역	충청북도문화재위원회 개별심의
1구역		
3구역	건축물 최고높이 8m이하 신축·증축 허용	건축물 최고높이 12m이하 신축·증축 허용
7구역	시·군 도시계획 조례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li> <li>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li> <li>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li> <li>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li> <li>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규제법),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사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제조사 조운),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 심의함.</li> <li>지하 50m 이상 굴착행위는 개별 심의함.</li> <li>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 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신청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li> <li>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단, 평지붕 8m 또는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li> <li>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li> <li>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li> <li>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조사·표본조사·시굴조사·정밀발굴조사 중 선택적용)를 실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미출토 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유구출토 시 사업시행 여부를 재검토함.</li> </ul> </li> <li>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li> <li>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li> </ul>	

### 3. 진천 노원리 마애여래입상(유형문화재 제189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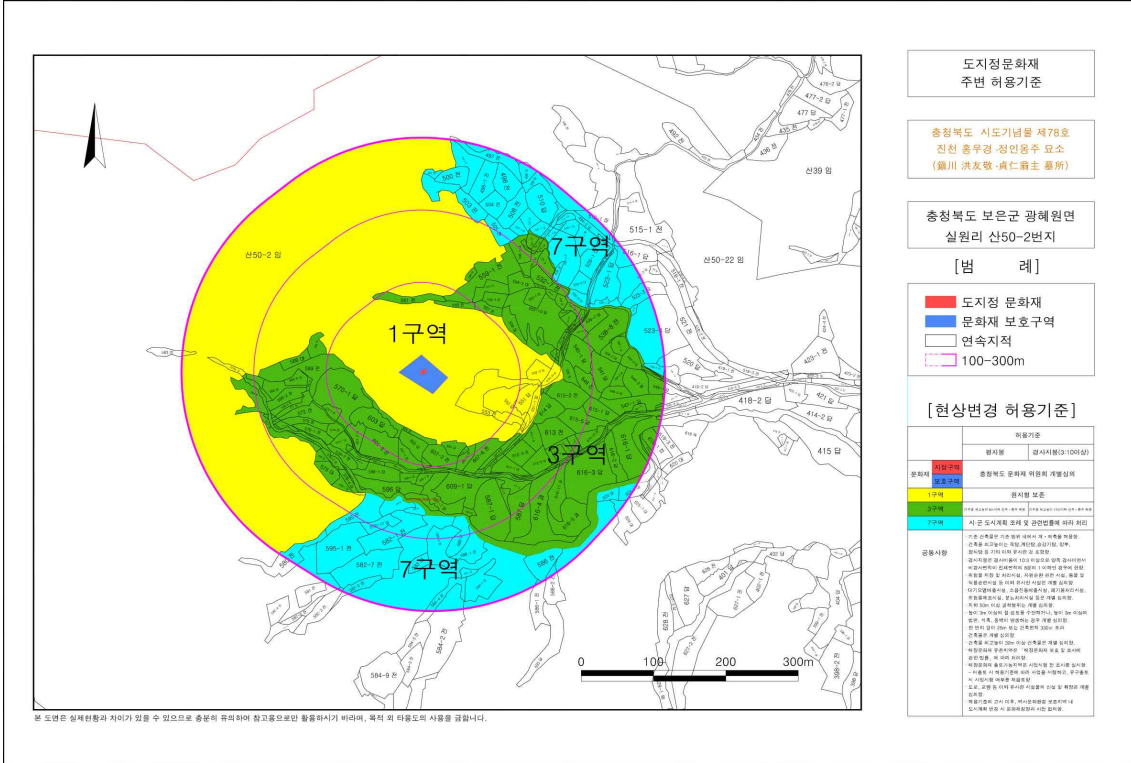
구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경사가 3:10이상)
문화재	지정구역	
	보호구역	• 충청북도문화재위원회 개별심의
	1구역	
	3구역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물 최고높이 8m이하 신축·증축 허용</li> <li>• 건축물 최고높이 12m이하 신축·증축 허용</li> <li>•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li> <li>•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li> <li>•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li> <li>•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li> <li>•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규제법),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 심의함.</li> <li>• 지하 50m 이상 굴착행위는 개별 심의함.</li> <li>•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 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li> <li>•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단, 평지붕 8m 또는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li> <li>•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li> <li>•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li> <li>• 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조사·표본조사·시굴조사·정밀발굴조사 중 선택적용)를 실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출토 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유구출토 시 사업시행 여부를 재검토함.</li> </ul> </li> <li>•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li> <li>•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li> </ul>	

#### 04. 진천 지암리 석조여래입상(유형문화재 제216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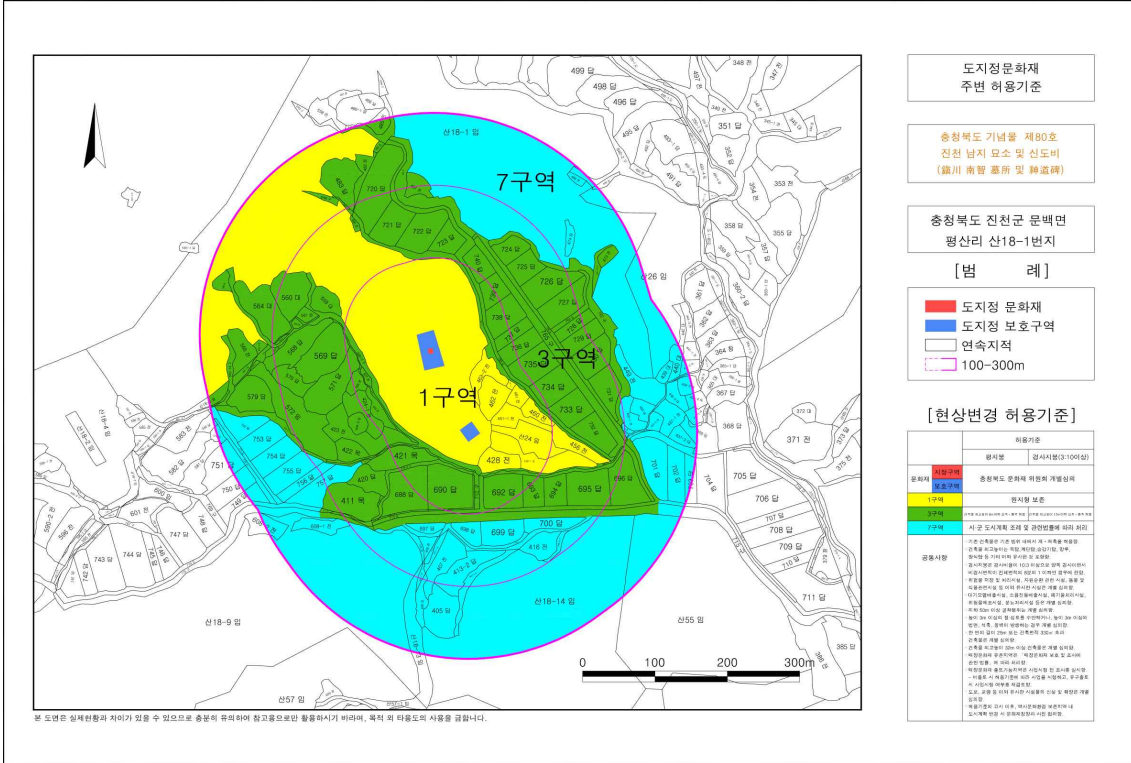
구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경사가 3:10이상)
문화재	지정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충청북도문화재위원회 개별심의</li> </ul>
	보호구역	
	1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군 도시계획 조례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li> </ul>
	7구역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li> <li>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li> <li>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li> <li>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li> <li>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규제법),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 심의함.</li> <li>지하 50m 이상 굴착행위는 개별 심의함.</li> <li>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li> <li>한 번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단, 평지붕 8m 또는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li> <li>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li> <li>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li> <li>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조사·표본조사·시굴조사·정밀발굴조사 중 선택적용)를 실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미출토 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유구출토 시 사업시행 여부를 재검토함.</li> </ul> </li> <li>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li> <li>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li> </ul>	

05. 진천 홍우경, 정인옹주 묘소(기념물 제78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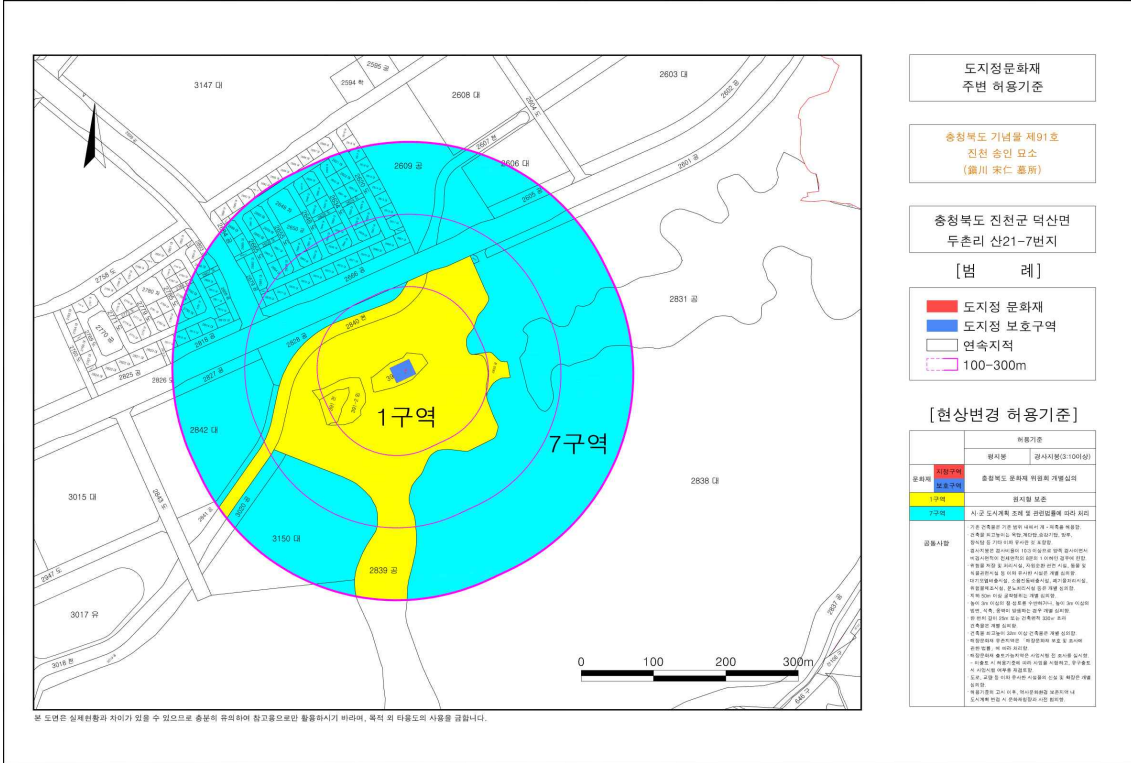
구 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경사가 3:10이상)
문화재	지정구역	
	보호구역	충청북도문화재위원회 개별심의
	1구역	
	3구역	건축물 최고높이 8m이하 신축·증축 허용
	7구역	건축물 최고높이 12m이하 신축·증축 허용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군 도시계획 조례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li> <li>·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li> <li>·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li> <li>·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li> <li>·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li> <li>·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규제법),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 심의함.</li> <li>· 지하 50m 이상 굴착행위는 개별 심의함.</li> <li>· 높이 3m 이상의 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 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li> <li>·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단, 평지붕 8m 또는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li> <li>·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li> <li>·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li> <li>· 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조사·표본조사·시굴조사·정밀발굴조사 중 선택적용)를 실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출토 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유출토 시 사업시행 여부를 재검토함.</li> </ul> </li> <li>·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li> <li>·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li> </ul>	

## 06. 진천 남지 묘소 및 신도비(기념물 제80호)



구 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경사가 3:10이상)
문화재	지정구역	
	보호구역	○ 충청북도문화재위원회 개별심의
공통사항	1구역	
	3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8m이하 신축·증축 허용
	7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12m이하 신축·증축 허용
	7구역	○ 시·군 도시계획 조례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li> <li>○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li> <li>○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li> <li>○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li> <li>○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규제법),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 심의함.</li> <li>○ 지하 50m 이상 굴착행위는 개별 심의함.</li> <li>○ 높이 3m 이상의 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 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li> <li>○ 한 번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단, 평지붕 8m 또는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li> <li>○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li> <li>○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li> <li>○ 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조사·표본조사·시굴조사·정밀발굴조사 중 선택적용)를 실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출토 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유구출토 시 사업시행 여부를 재검토함.</li> </ul> </li> <li>○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li> <li>○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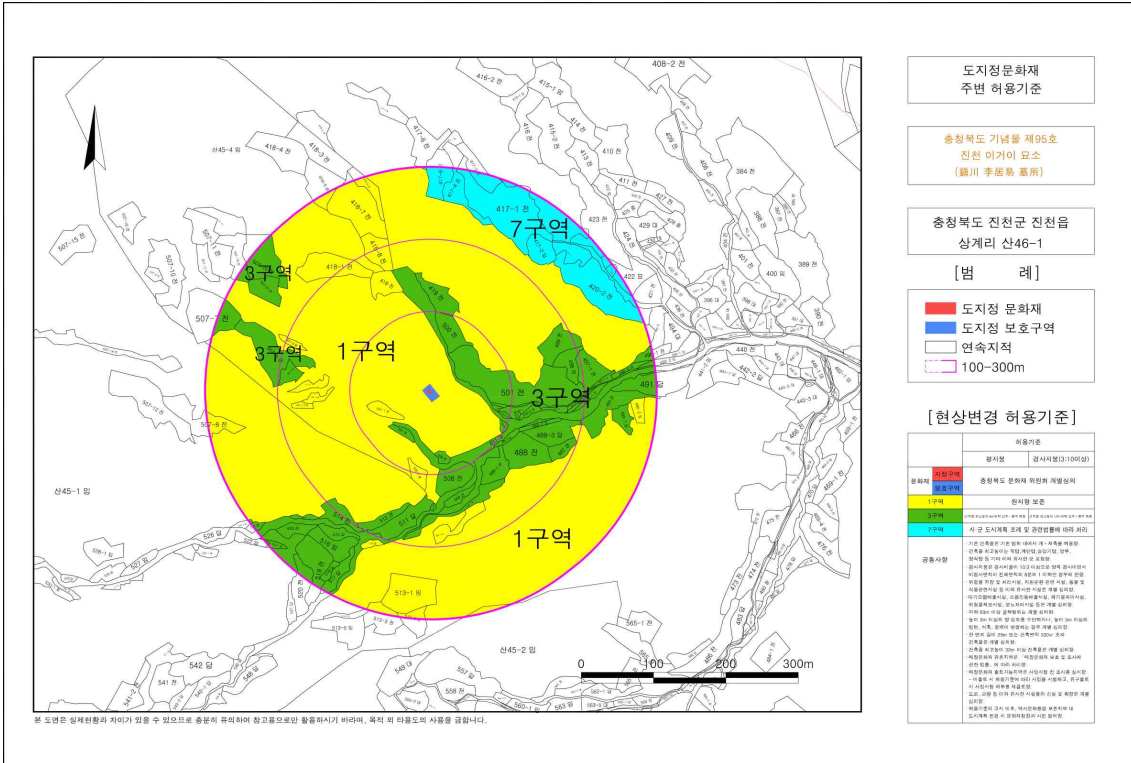
## 07. 진천 송인 묘소(기념물 제91호)



구 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경사가 3:10이상)
문화재	지정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충청북도문화재위원회 개별심의</li> </ul>
	보호구역	
공통사항	1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군 도시계획 조례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li> <li>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li> <li>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li> <li>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li> <li>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li> <li>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규제법),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 심의함.</li> <li>지하 50m 이상 굴착행위는 개별 심의함.</li> <li>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li> <li>한 번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단, 평지붕 8m 또는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li> <li>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li> <li>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li> <li>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조사·표본조사·시굴조사·정밀발굴조사 중 선택적용)를 실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출토 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유구출토 시 사업시행 여부를 재검토함.</li> </ul> </li> <li>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li> <li>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li> </ul>
	7구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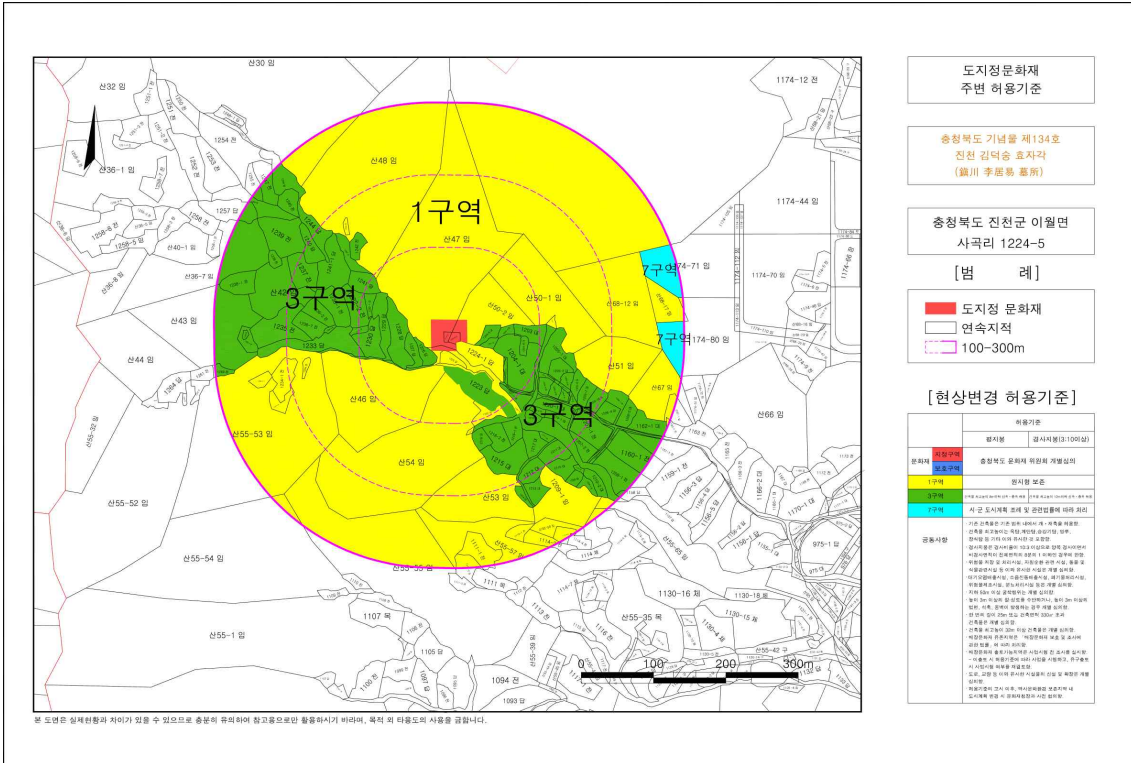


## 09. 진천 이거이 묘소(기념물 제95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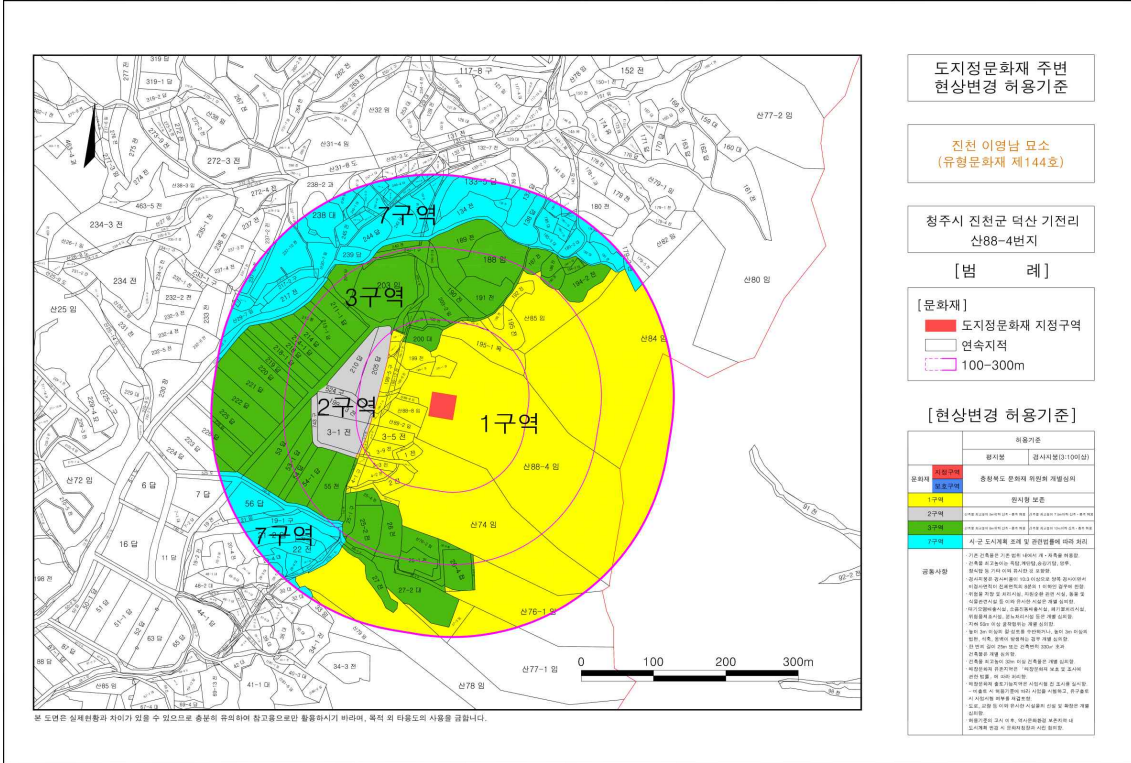
구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경사가 3:10이상)
문화재	지정구역	
	보호구역	• 충청북도문화재위원회 개별심의
	1구역	
	3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8m이하 신축·증축 허용
	7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12m이하 신축·증축 허용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군 도시계획 조례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li> <li>•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li> <li>•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li> <li>•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li> <li>•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li> <li>•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규제법),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 심의함.</li> <li>• 지하 50m 이상 굴착행위는 개별 심의함.</li> <li>• 높이 3m 이상의 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 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li> <li>• 한 번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단, 평지붕 8m 또는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li> <li>•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li> <li>•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li> <li>• 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조사·표본조사·시굴조사·정밀발굴조사 중 선택적용)를 실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출토 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유구출토 시 사업시행 여부를 재검토함.</li> </ul> </li> <li>•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li> <li>•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li> </ul>	

### 10. 진천 김덕송 효자각(기념물 제134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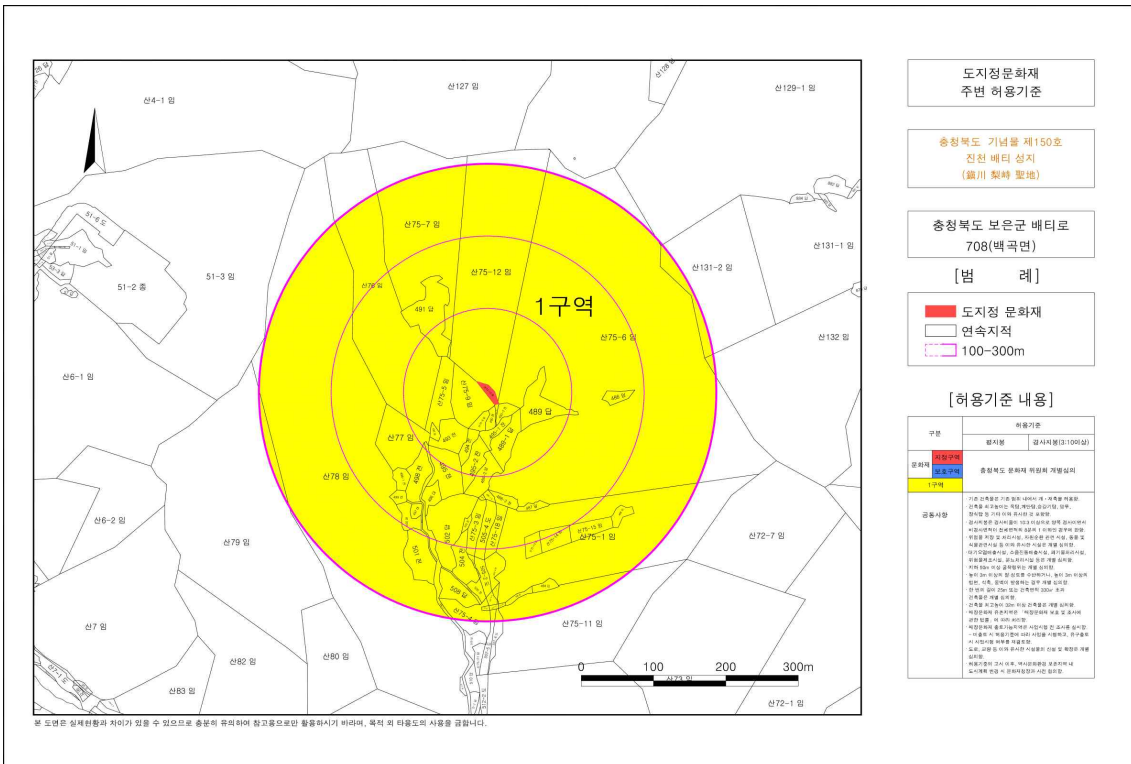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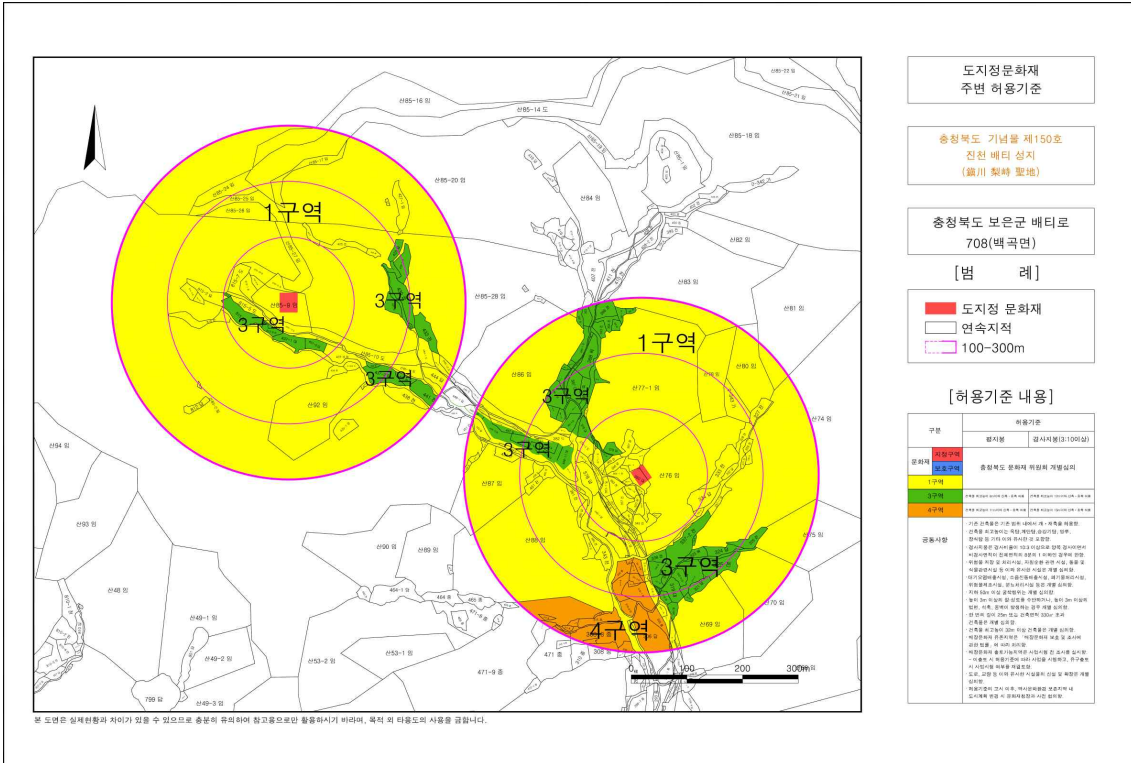
구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경사가 3:10이상)
문화재	지정구역	
	보호구역	○ 충청북도문화재위원회 개별심의
	1구역	
	3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8m이하 신축·증축 허용
	7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12m이하 신축·증축 허용
공통사항	○ 시·군 도시계획 조례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규제법),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 심의함.	
	○ 지하 50m 이상 굴착행위는 개별 심의함.	
	○ 높이 3m 이상의 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 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한 번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단, 평지붕 8m 또는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 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조사·표본조사·시굴조사·정밀발굴조사 중 선택적용)를 실시함.		
○ 미출토 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유출토 시 사업시행 여부를 재검토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 11. 진천 이영남 묘소(기념물 제144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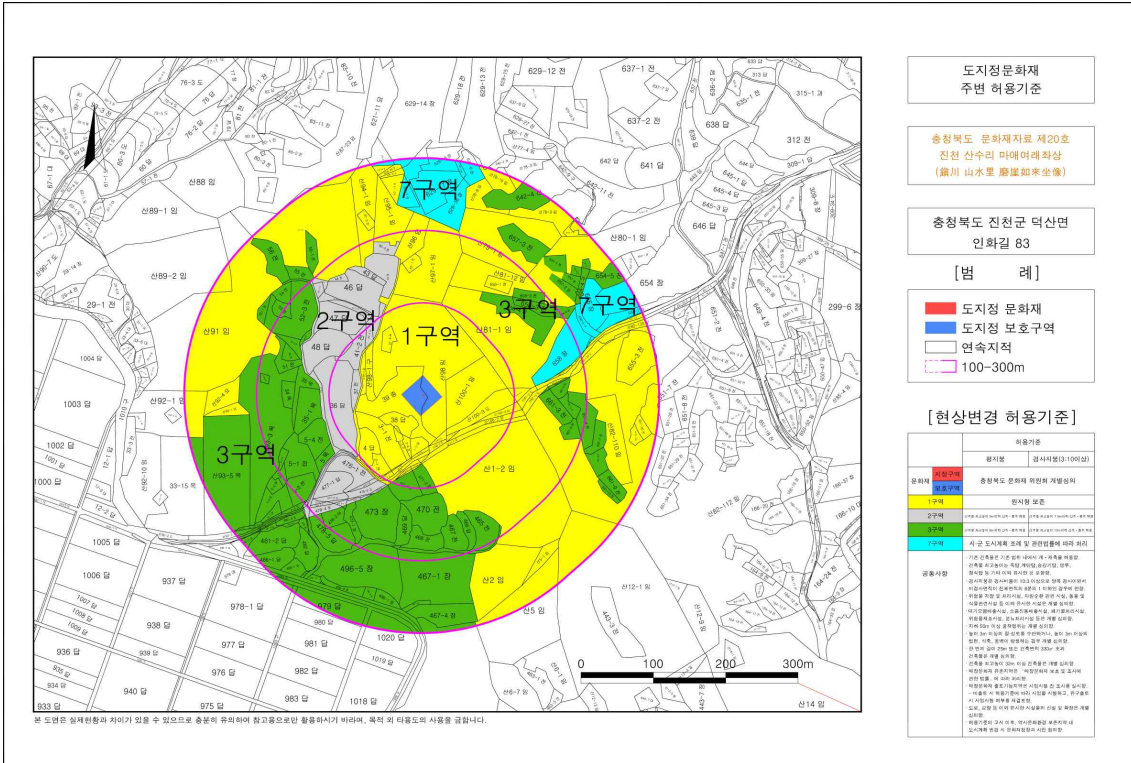
구 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경사가 3:10이상)
문화재	지정구역	
	보호구역	◦ 충청북도문화재위원회 개별심의
공통사항	1구역	
	2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5m이하 신축·증축 허용
	3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8m이하 신축·증축 허용
	7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12m이하 신축·증축 허용
	7구역	◦ 시·군 도시계획 조례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li> <li>◦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li> <li>◦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li> <li>◦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li> <li>◦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규제법),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 심의함.</li> <li>◦ 지하 50m 이상 굴착행위는 개별 심의함.</li> <li>◦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 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li> <li>◦ 한 번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단, 평지붕 8m 또는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li> <li>◦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li> <li>◦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li> <li>◦ 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조사·표본조사·시굴조사·정밀발굴조사 중 선택적용)를 실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출토 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유구출토 시 사업시행 여부를 재검토함.</li> </ul> </li> <li>◦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li> <li>◦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li> </ul>		

## 12. 진천 배티성지(기념물 제150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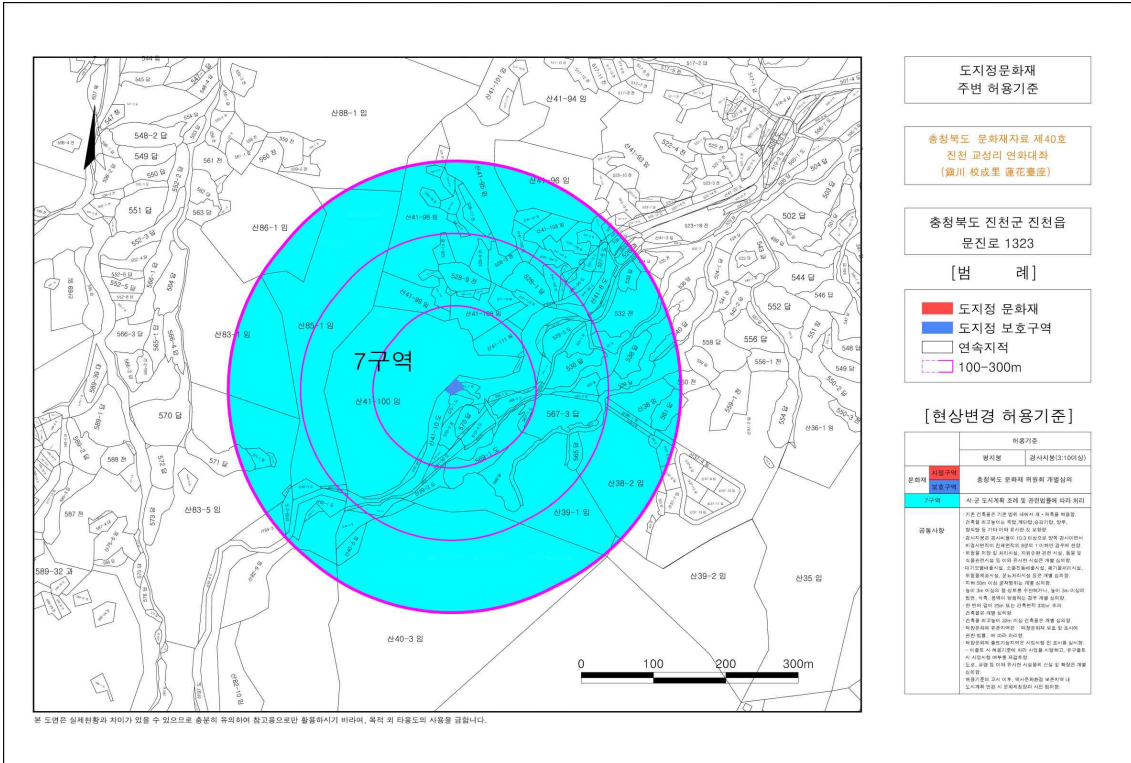
구 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경사가 3:10이상)
문화재	지정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충청북도문화재위원회 개별심의</li> </ul>	
	보호구역		
	1구역		
	3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축물 최고높이 8m이하 신축·증축 허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축물 최고높이 12m이하 신축·증축 허용</li> </ul>
	4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축물 최고높이 11m이하 신축·증축 허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축물 최고높이 15m이하 신축·증축 허용</li> </ul>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li> <li>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li> <li>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li> <li>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li> <li>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규제법),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 심의함.</li> <li>지하 50m 이상 굴착행위는 개별 심의함.</li> <li>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li> <li>한 번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단, 평지붕 8m 또는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li> <li>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li> <li>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li> <li>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조사·표본조사·시굴조사·정밀발굴조사 중 선택적용)를 실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미출토 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유구출토 시 사업시행 여부를 재검토함.</li> </ul> </li> <li>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li> <li>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li> </ul>	

### 13. 진천 산수리 마애여래좌상(문화재자료 제20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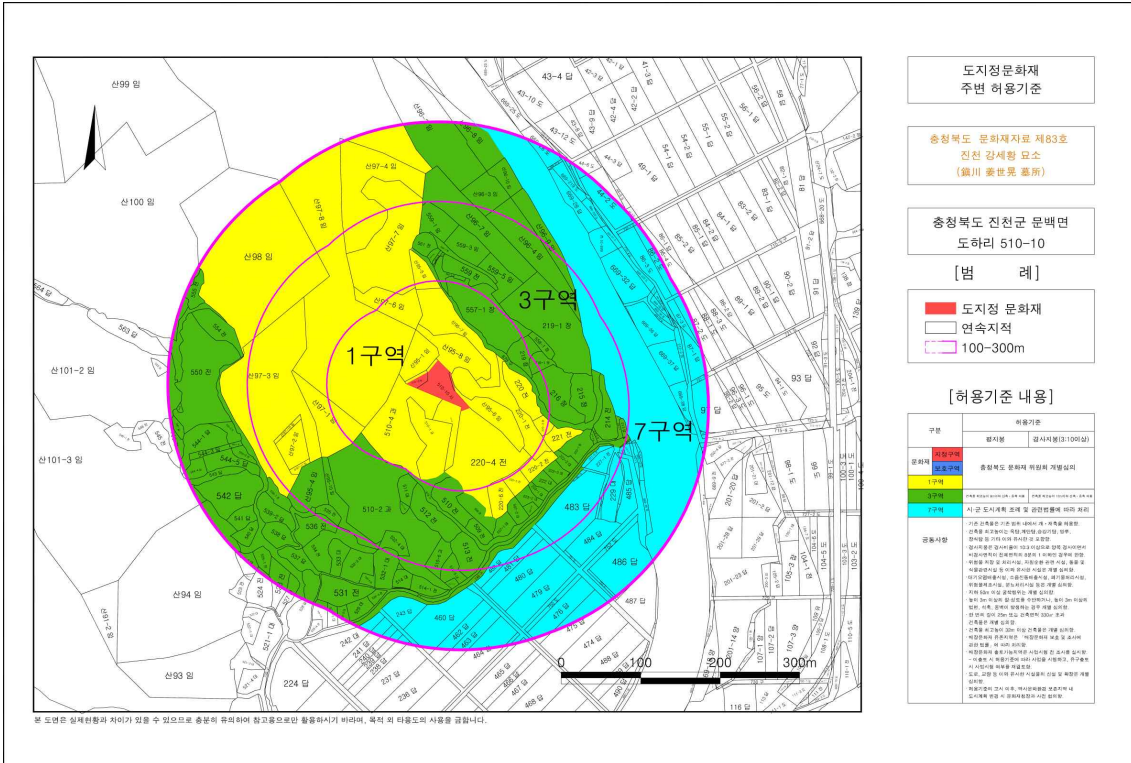
구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경사가 3:10이상)
문화재	지정구역	
	보호구역	충청북도문화재위원회 개별심사
1구역		
2구역	건축물 최고높이 5m이하 신축·증축 허용	건축물 최고높이 7.5m이하 신축·증축 허용
3구역	건축물 최고높이 8m이하 신축·증축 허용	건축물 최고높이 12m이하 신축·증축 허용
7구역	시·군 도시계획 조례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li> <li>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li> <li>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li> <li>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li> <li>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규제법), 폐기물처리 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제조소 준용), 분뇨처리 시설(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 심의함.</li> <li>지하 50m 이상 굴착행위는 개별 심의함.</li> <li>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 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li> <li>한 번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단, 평지붕 8m 또는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li> <li>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li> <li>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li> <li>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조사·표본조사·시굴조사·정밀발굴조사 중 선택적용)를 실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미출토 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유출토 시 사업시행 여부를 재검토함.</li> </ul> </li> <li>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li> <li>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li> </ul>	

### 14. 진천 교성리 연화대좌(문화재자료 제40호)



구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경사가 3:10이상)
문화재	지정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충청북도문화재위원회 개별심의</li> </ul>
	보호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군 도시계획 조례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li> </ul>
7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li> <li>○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li> <li>○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li> <li>○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li> <li>○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규제법),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 심의함.</li> <li>○ 지하 50m 이상 굴착행위는 개별 심의함.</li> <li>○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li> <li>○ 한 번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단, 평지붕 8m 또는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li> <li>○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li> <li>○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li> <li>○ 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조사·표본조사·시굴조사·정밀발굴조사 중 선택적용)를 실시함.</li> <li>- 미출토 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유구출토 시 사업시행 여부를 재검토함.</li> <li>○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li> <li>○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li> </ul>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li> <li>○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규제법),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 심의함.</li> <li>○ 지하 50m 이상 굴착행위는 개별 심의함.</li> <li>○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li> <li>○ 한 번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단, 평지붕 8m 또는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li> <li>○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li> <li>○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li> <li>○ 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조사·표본조사·시굴조사·정밀발굴조사 중 선택적용)를 실시함.</li> <li>- 미출토 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유구출토 시 사업시행 여부를 재검토함.</li> <li>○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li> <li>○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li> </ul>	

### 15. 진천 강세황 묘소(문화재자료 제83호)



구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경사가 3:10이상)
문화재	지정구역	
	보호구역	충청북도문화재위원회 개별심의
1구역	시·군 도시계획 조례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3구역	건축물 최고높이 8m이하 신축·증축 허용	건축물 최고높이 12m이하 신축·증축 허용
7구역	시·군 도시계획 조례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li> <li>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li> <li>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li> <li>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li> <li>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규제법),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 심의함.</li> <li>지하 50m 이상 굴착행위는 개별 심의함.</li> <li>높이 3m 이상의 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 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li> <li>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단, 평지붕 8m 또는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li> <li>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li> <li>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li> <li>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조사·표본조사·시굴조사·정밀발굴조사 중 선택적용)를 실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출토 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유구출토 시 사업시행 여부를 재검토함.</li> </ul> </li> <li>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li> <li>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li> </ul>	